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3.
발의자 : 박성훈 · 박충권 · 김성원
김위상 · 김기웅 · 고동진
김기현 · 김승수 · 최수진
윤영석 · 이인선 · 한지아
박수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력의 생산·공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전력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, 생산 감소 및 고용 위축 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, 전

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).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
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
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담금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
이후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1조(부담금) ① (생 략)</p> <p>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1조(부담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<u>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</u>」 <u>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】</u></p>
<p>③ ~ ⑦ (생 략)</p>	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